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(폐차)공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지 송달불능 공시송달 공고

우리구 관내 도로 및 타인의 토지 등에 무단 방치되어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『자동차관리법』 제26조 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6조, 시행규칙 제24조(자동차처리명령) 규정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강제처리(폐차)공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지를 등기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부재, 주소불명, 폐문 또는 이사감 등의 사유로 전달이 불가능하여 『행정절차법』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다음과 같이 공시송달(공고)합니다.

2024년 04월 26일



- 1. 공고 기간 : 2024년 04월26일 ~ 2024년 05월10일
- 2. 공고 대상 : 무단방치 자동차(이륜차포함) 12대 (붙임 참조)
- 3. 자동차 강제처리(폐차) 일시 : 2024년 05월 11일 이후
- 4. 자동차 강제처리(폐차) 장소 : ㈜아시아오토, 금강자동차해체산업
- 5. 소유자(점유자)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
 - 가. 대상차량에 대해 압류 및 저당권 등 권리사항이 있는 이해관계인께서는 지정한 기일까지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라며, 공고 기한내 의견진술(권리행사) 등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자동차 강제처리(폐차)후 직권말소 조치합니다.
 - 나. 자동차 소유자(점유자)는 공고기간내에 자진처리를 이행하지 않으면 자동차관 리법 제81조 및 제85조 내지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150만원이하의 범 칙금이나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.
 - 다. 강제처리(폐차)할 때에는 차량 내 모든 물건도 함께 폐기처분되며, 모든 책임은 소유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- 7. **의견제출(권리행사) 및 문의처** : 영등포구청 교통행정과(T.02-2670-3749)